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6.

발 의 자 : 한지아 · 박성훈 · 김 건  
정성국 · 배준영 · 이상휘  
김기현 · 서일준 · 김재섭  
고동진 · 김성원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「도로교통법」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이러한 사고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로 위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사설 구급차에 대한 관리·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음주운전·무면허운전·약물운전 등 중대한 「도로교통법」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

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,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·감독 책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명확히 부여하려는 것임.(안 제44조의5 신설 등).

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5(구급차 운용자의 관리·감독 의무) ①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의 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유효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구급차의 운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·감독 의무 이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한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137조에 따라 운전면허·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 서류(이하 “운전경력증명서”라 한다)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구급차의 운용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구급차 운행 중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교통법규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운전자의 구급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관리·감독의 기준·방법, 제2항에 따른 증명 요청

의 요건·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·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5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4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44조의5(구급차 운용자의 관리 · 감독 의무) ①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의 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유효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 · 감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구급차의 운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 · 감독 의무 이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한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137조에 따라 운전면허 ·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 서류(이하 “운전경력증명서”라 한다)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구급차의 운용자는 운전경</u></p>

력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운전 면허가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구급차 운행 중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교통법규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운전자의 구급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관리·감독의 기준·방법, 제2항에 따른 증명요청의 요건·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·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5조(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·자격 정지 등) ①·② (생략)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(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. 이하 제4항에서 같다)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

제55조(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·자격 정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·6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4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
6.·7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